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(노들섬 다목적홀 숲)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17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노들섬 다목적홀(숲)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발레단 전용공간으로 조성하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이하 공유재산법)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공유재산(노들섬 다목적홀 숲) 현황

- 주 소 : 용산구 양녕로 446(이촌동 302-6,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동측)
- 규 모 : <토지> 1,906.38㎡ / <건물> 1,222.83㎡

층수	내용	면적(㎡)
계		1,222.83
지상1층	다목적홀, 세미나실, 화장실, 창고 등	1,024.87
지상2층(지붕층 포함)	공용공간, 기계실, 창고 등	197.96

- 재산관리관 : 문화정책과장

### 나. 공유재산 사용계획

- 사용자(수허가자) :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
- 허가기간 : '24. 5. 3. ~ '27. 5. 2.[3년]

- 공유재산 주요 사용계획(안) : 서울시 발레단 전용공간 조성·운영

위치	구분	면적(㎡)	주요 용도
지상1층	다목적홀 숲	573	연습실①, ②
	세미나실 A	110	사무실
	세미나실 B	83	재활운동실
	세미나실 C	67	탈의실, 샤워실
지상2층	공용공간 등	197	공용공간 등

- 허가조건 :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
- 허가방법 : 수의계약(「공유재산법」 제20조, 동법 「시행령」 제13조)

#### 다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
  -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자, 비영리공공법인이며, ‘서울시 발레단 운영’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
  -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시 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가능
- ※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(3.21.)결과 : 조건부 적정(시의회 동의시)
- 다양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
  - 문화공간이라는 상징성과 공간적으로 적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들섬 다목적홀을 서울시발레단 전용공간으로 조성·운영하여 노들섬 문화인프라(콘텐츠)와 연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
- 불필요한 세입·세출 상계 지양으로 행정·회계 효율성 제고
  -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(징수)할 경우, 노들섬 다목적홀(숲) 사용료만큼의 市(문화본부)의 세출(출연금)과 세입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국세(부가가치세) 지출 부담 등 행정·회계의 비효율성 방지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후 사용료 면제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장정숙 (☎ 2133-2519)